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審査報告書

1994. 3. 16
行政財務委員會

1. 審査經過

- 가. 提案日字 및 提案者 : 1994年 2月 26日 區廳長提出
- 나. 回附日字 : 1994年 2月 28日 回附
- 다. 上程日字 : 第23回 永登浦區議會(臨時會)第 1次 委員會(1994年 3月 16日) 上程議決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提案說明者 財務局長 朴忠會)

가. 提案理由

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자치구세 조례 개정

나. 主要骨子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중 제17호 제 5호, 제24조 중 “중기”를 “건설기계”로 명칭 변경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

(專門委員 : 姜性熙)

'93. 6. 11 重機管理法 및 '93. 12. 31 同法 施行令이 全面 改正됨에 따라 關聯 地方稅法施行令 一部 改正으로 因하여 變更된 用語(重機→建設機械)等을 改正 整備하기 위하여 93. 12. 31 市長으로부터 示達된 改正準則(案)에 따라 改正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要請案대로 改正함을 要한다고 思料됨.

4. 審査結果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1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4. 2. 24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자치구세 조례 개정

2. 주요골자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중 제17조 제 5호, 제24조중 “중기”를 “건설기계”로 명칭변경

3. 관련법규

중기관리법 시행령 부칙 7조(다른 법령의 개정)

4. 예산조치

별도 예산 조치 필요 없음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 제 5 호 “중기”를 “건설기계”로 한다.

제19조 제 1 항 본문중 “법 제184조의 3 제 2 항 제 7 호”를 “법 제184조의 3 제 2 항 제 6 호”로 한다.

제24조중 “중기”를 각각 “건설기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)	제17조(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)
법 제184조, 법 제184조의 2 및 법 제18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(현행과 같음)
1. 소유자의 주소, 거소,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
2. 건축물의 소재, 종류, 구조, 바닥면적, 연면적 및 용도
3. 교회, 성당,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 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
4.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·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
5. 중기의 명칭 및 종류, 취득년월일, 등록번호, 등록년월일, 용도	5. 건설기계의
6. 선박의 선질, 명칭, 정계장, 구조, 용도, 총톤수 또는 적재량
7. 항공기의 종류, 이륙중량, 적재능력, 항공기의 형식 및 용도

현행	개정안
<p>제19조(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)</p> <p>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7호에서 “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”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구매,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2. 보관, 가공,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3. 생산 및 검사사업용 건축물 4. 농어민 교육시설용 건축물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.</p>	<p>제19조(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)</p> <p>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6호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
<p>제24조(증기에 대한 신고의무)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증기의 명칭 및 종류·취득년월일·등록번호·등록년월일·용도·취득가격·과세사실발생년월일·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증기를 취득한 때 2. 증기를 매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. 국외에서 사용하던 증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. 비과세 증기가 과세 증기로 된 때 5. 과세 증기가 비과세 증기로 된 때 	<p>제24조(건설기계에 대한 신고의무)</p> <p>..... 건설기계의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1. 건설기계를</p> <p>2. 건설기계를</p> <p>3. 건설기계를.....</p> <p>.....</p> <p>4.건설기계가.....건설기계로</p> <p>5.건설기계가.....건설기계로</p>